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저온에서 침투성이 높아 목재류의 소독에 적합한 에탄디니트릴(EDN)이 개발됨에 따라 이를 농약 약종인 수출입식물에 대한 방제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가스농도측정기, 미량 가스검지기 및 방독면 등의 시설·장비 기준의 사용 약종에 EDN을 추가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에 추가된 사용 약제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추가하는 한편, 국제 화학물질 분류체계(GHS)기준에 맞추어 부처별로 상이했던 국내 화학물질 분류·표시기준의 통합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('19.6월)함에 따라 농약 원제의 독성 정도에 따른 현행 분류 중 급성독성 물질의 분류를 5가지에서 4가지로, 급성환경유해성 물질의 분류를 3가지에서 1가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0. 10. 26. ~ 12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2 제2호 중 1란부터 3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사용약종별 (MB, PH ₃ , Ethyl formate, EDN) 가스농 도측정기 ○가스검정기	3대 이상	○간접계식 또는 열전도식이나,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○측정범위 0 ~ 100mg/ℓ 이상, 최소측정단위 5mg/ℓ 이내 일 것	○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 을 받을 것
	1대 이상	○간접계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 의 성능을 가진 것 ○측정범위 0 ~ 30mg/ℓ 이상, 최소측정단위 2mg/ℓ 이내 일 것	○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 을 받을 것
	Ethyl formate 측정용 1대 이상 (사용 약종이 Ethyl formate 인 경우로 한정한다)	○적외선 측정방식이나 같은 수 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○측정범위 0 ~ 80mg/ℓ 이상, 최소측정단위 0.3mg/ℓ (0.01%) 이내 일 것	○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 을 받을 것

	EDN 측정용 1대 이상 (사용 약종이 EDN인 경우로 한정한다)	○간접계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 의 성능을 가진 것 ○측정범위 0 ~ 300mg/ℓ 이상, 최소측정단위 0.2mg/ℓ 이내 일 것	○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 을 받을 것
2. 사용약종별 (MB, PH ₃ , HCN, EDN) 미량 가스검 지기			
○가스채취기 및 검지기	5대 이상	○채취량 100ml 이상 일 것 ○허용(관리)농도에서 변색이 될 것 ○HCN 검지관의 측정범위가 0 ~ 3,000ppm 이상 일 것 (청산 성분의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	
○가스누출 검지기	5대 이상	○열선형반도체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, 3초 이내의 응답·경보 기능을 갖출 것	
	EDN 측정용 1대 이상 (EDN 소독으로 한정한다)	○전기화학식이나 같은 수준 이 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, 3 초 이내의 응답·경보 기능을 부착한 것 ○EDN 측정용의 측정범위가 0 ~ 50ppm 이상 일 것	○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 을 받을 것
	HCN 측정용 1대 이상 (EDN 소독으로 한정한다)	○전기화학식이나 같은 수준 이 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, 3 초 이내의 응답·경보 기능을 부착한 것	○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 을 받을 것

○염색반응형 가스검지기 (MB용)	5대 이상	○HCN 측정용의 측정범위가 0 ~ 100ppm 이상 일 것 ○불꽃식으로서, 약종별 허용농 도 이하의 가스검지가 가능한 것	
	10개 이상	○전면형으로서, 유효기간이 경 과되지 않을 것 ○방독마스크용 흡수관은 사용하 는 약제에 대해 약제별(MB, P H ₃ , HCN, EDN 등)로 각각 1 0개 이상 확보할 것	
3. 방독마스크 및 방독마스 크용 흡수관	3개 이상	○반면형으로서, 유효기간이 경 과되지 않을 것 ○방독마스크용 흡수관은 사용하 는 약제에 대해 약제별(MB, P H ₃ , HCN, EDN 등)로 각각 3 개 이상 확보할 것	○약제의 노출허용 농도(TLV-TWA) 이하 작업에서만 사용할 것

별표 3의4 제1호나목 후단 중 “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”을 “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”로 한다.

별표 3의6 제1호가목 중 “5가지”를 “4가지”로 하고, 같은 표의 제2호가목 중 “3가지”를 “1가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